

#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5,787,487	9,473,625
일반회계	272,553,881	8,176,616
특별회계	43,233,606	1,297,008
공기업특별회계	12,510,990	375,3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510,990	375,330
기타특별회계	30,722,616	921,678
주택사업특별회계	12,000	360
의료보호특별회계	655,624	19,669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52,000	61,560
장학사업특별회계	6,994,500	209,83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00,000	6,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83,630	62,509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04,000	27,120
기반시설특별회계	45,653	1,370
수질개선특별회계	17,775,209	533,25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 당 없 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92,85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